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. 1. 12 선고 2022가단152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율로, 담당변호사 남성진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유리

변 론 종 결 2022. 11. 3.

판 결 선 고 2023. 1. 12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9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다툼 없는 사실

가.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C 외 2필지 지상 D아파트 E호(이하 ‘이 사건 아파트’라 한다)에 관하여 2015. 6. 17.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6. 5. 4.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.

나.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7. 1. 19. 채권최고액 154,800,000원, 채무자 피고,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.

2. 원고의 주장

가. 위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인데, 2016. 5. 4. 당시 사위였던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.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154,800,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.

나. 그 외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40,000,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소한 190,000,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가.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증명책임이 있다(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). 나.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보았으나,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아파트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편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다. 원고는 그 외에도 피고에게 40,000,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,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.

4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,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노행남